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관내 기업체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안내 협조 요청

1. 관내 산업단지 내의 사업체에서 근로자(외국인 포함)가 코로나바이러스-19에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으며, 겨울철 7차 유행 대비하여 **관내 기업체 대상 코로나바이러스-19 확진자 관리 사항을**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, **소관부서는 아래사항을 관련 업체 및 단체에 전파하여** 코로나바이러스-19 확진자의 격리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가. **(확진자 격리)*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**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대상임**을 개별적으로 통지

* 예시) 11. 1. 검체채취 후 확진된 경우 11. 7. 24:00 까지 격리 후 별도 통보없이 해제

나. **(확진자의 일시적 외출)** 격리기간 중 확진자는 **병·의원 방문, 의약품 구매·수령, 임종 및 장례식(의료기관 등 사망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**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 가능

*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<https://c11.kr/wpv5>

다. **(확진자 벌칙)** 확진자가 격리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79조 등에 따라 **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**

라. **(대표자 등 벌칙)** 사업체에서 확진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출근시 감염병예방법 제82조(양벌규정)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**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부과**. 끝

화성시보건소장



수신자 화성시장(소상공인과장), 화성시장(기업지원과장), 화성시장(축산과장), 화성시장(해양수산과장), 화성시장(농업정책과장), 화성시장(농식품유통과장), 화성시장(일자리정책과장), 화성상공회의소, 기업인협의회

지방간호서기 **강병은** 감염병대응팀 감염병관리과 전결 2022. 11. 2.
장 손경자 장 심정식

협조자

시행 감염병관리과-25431 (2022. 11. 2.) 접수 기업지원과-13156 (2022. 11. 2.)

우 1859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.1만세로 1055,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/ <http://www.hscity.go.kr>

전화번호 031-5189-1128 팩스번호 031-5189-1407 / kbe4646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청렴한 당신이 화성시의 주인입니다.